

공무국외출장 자체점검표

항 목	점 검 결 과 (■표시)		
출 장 의 필 요 성	국외출장을 통해서만 목적의 달성이 가능한가	그렇다 ■ 아니다 □	
	최근 3년간 유사·중복 출장이 있는가	그렇다 □ 아니다 ■ - 검토의견 : 미국 기관방문 및 사례조사는 최초이며, 도서관 복합화사례는 미국 유일의 사례임	
출 장 자 의 적 격 성	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(출연기관, 계약업체, 수탁기관 등)	그렇다 □ 아니다 ■ - 동행자 및 사유 :	
	출장자의 현재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	그렇다 ■ 아니다 □	
	여행인원은 필수적 인원으로 최소화했는가	그렇다 ■ 아니다 □	
	이전 국외출장의 귀국보고서를 제출했는가 (출장자 전원 해당)	그렇다 ■ 아니다 □ 해당없음 □ - 검토의견 : 전원 제출	
기 간 및 시 기 의 적 합 성	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했는가	그렇다 ■ 아니다 □	
	불필요한 일정(관광 등)이 포함되어 있는가	그렇다 □ 아니다 ■	
경 비 의 정 성	공사여비규정 제3장(국외출장) 및 공무원여비규정을 확인하고 경비를 편성했는가	그렇다 ■ 아니다 □	
	위 규정에 따라 출장자의 직급, 출장지의 등급을 준수하여 경비를 편성했는가	그렇다 ■ 아니다 □	
	운임, 체재비(일비, 숙박비, 식비)를 국외여비 예산과목내에서 편성했는가	그렇다 ■ 아니다 □	
	이전 국외출장에서 적절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했는가 (동일 항공사 이용시)	그렇다 □ 아니다 ■ - 아닌 사유 : 마일리지 없음	
	항공, 철도, 선박, 자동차(버스를 말함)운임을 도시간, 국가간 이동에 한하여 실비 편성했는가	그렇다 ■ 아니다 □ 해당없음 □	
	국외여비 외 예산으로 렌트카, 전세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기간 일비를 1/2로 감액했는가	그렇다 □ 아니다 □ 해당없음 ■	
	숙박비를 실비(상한액이하)로 편성했는가(정산필요)	그렇다 ■ 아니다 □ - 아닌 사유 :	
	실제로 식사하는 회수에 따라 식비를 편성했는가	그렇다 ■ 아니다 □	
규 정 준 수	규정 제8조에 따른 제출서류를 준수했는가	그렇다 ■ 아니다 □	
	심사 의무 대상인 경우	규정 제8조에 따라 출국일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의 심사를 신청했는가	그렇다 ■ 아니다 □ 해당없음 □
	심사 생략 대상인 경우	규정 제8조에 따라 출국일 2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 방침을 제출했는가	그렇다 □ 아니다 □ 해당없음 ■
	규정 제9조에 따라 출장계획 수립시 인사부서장 및 예산부서장과의 사전협의를 거쳤는가 (협조결재 필수)	그렇다 ■ 아니다 □	